

서울특별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548
----------	------

2024년 3월 5일
환경수자원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년 2월 2일, 봉양순 의원 외 26명
나. 회부일자 : 2024년 2월 7일
다. 상정일자 : 제322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의회 제2차 환경수자원위원회
(2024년 3월 5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봉양순 의원]

가. 제안이유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산림문화 및 산림휴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여가활동을 활성화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산림문화·휴양 지역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산림문화·휴양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3) 자연휴양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4) 산림치유지도사의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 5) 정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4. 전문위원 검토보고

가. 개요

- 본 제정안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산림문화 및 산림휴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여가활동을 활성화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나. 검토의견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은 산림문화와 산림휴양자원의 보전·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휴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05년 8월 제정(시행)된 바 있음.
- 법 제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산림문화·휴양 진흥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산림의 보전과 이용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는 푸른도시여가국 자연생태과와 공원여가사업과에서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¹⁾
- 본 제정안은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반영하고 서울시의 정책 현황에 맞게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향후 자연휴양림, 산림치유 및 숲길 사업 등의 정책의 구체화에 따라 관련 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것으로써 시의적절하다 판단됨.
- 특히, 지난해 10월 개정²⁾된 법에서는 산림치유 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1) 자연생태과 :자연생태기획(산림휴양, 자연휴양림, 치유의숲, 숲길, 둘레길, 등산로 등) 및 산림관리, 생태계 보전 등
공원여가사업과 : 산림여가(산림복지, 유아숲, 숲해설, 서울둘레길) 등

2)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시행 2024. 5. 1.] [법률 제19804호, 2023. 10. 31., 일부개정]

‘산림치유정책’, ‘치유시설’을 정의하고 있고 ‘숲길’의 운영관리 측면에 관한 사항을 확대(숲길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하고 있으므로 서울시에서도 법 제22조의2(숲길의 종류)에 따라 ‘숲길’을 등산로, 탐방로, 트레킹길 등으로 세분화하는 등 관련 정책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세부적으로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이 5년마다 산림문화·휴양계획(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산림문화, 산림휴양, 산림치유 등 부분별 계획과 함께 자원 현황과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바, 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자원 현황 파악, 운영관리 방안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자연휴양림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현재 수락산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³⁾이 서울시 최초로 추진되고 있고 향후 지속사업⁴⁾으로 계획 중임을 고려할 때 시의적절하다 판단되며, 추후 자연휴양림 개장에 따라 법 제21조의5(자연휴양림등의 입장료 등의 징수)⁵⁾에서 위임된 이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반영해야 할 것임.
- 최근 전국적으로 산림을 이용한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불암산 힐링타운’과 같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과 연계하여 산림여가공간⁶⁾을 조성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고 정책을 구체화하는 등 추가적인 조례 개정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임.

3) 수락산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기간(2019~2024.7.), 시범운영('24.8.~12.), 공식 개장('25.1.예정)

4)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안): 사업기간(2024~2026)

5)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① 자연휴양림등의 소유자는 자연휴양림등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 2. 21.>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의 징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8. 2. 21.>

6) 불암산 힐링타운(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동 산 42-3 등): 산림치유센터, 유아숲체험장, 철쭉동산, 서울둘레길 등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산림문화 및 산림휴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여가활동을 활성화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문화”란 산림과 인간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되는 정신적·물질적 산물의 총체로서 산림과 관련한 전통과 유산 및 생활양식 등과 산림을 활용하여 보고, 즐기고, 체험하고, 창작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산림휴양”이란 산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심신의 휴식 및 치유 등을 말한다.
3. “자연휴양림”이란 시민의 정서함양·보건휴양 및 산림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한 산림(휴양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산림치유”란 향기, 경관 등 자연의 다양한 요소를 활용하여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5. “산림치유지도사”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3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추고 산림치유를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치유의 숲”이란 산림치유를 할 수 있도록 조성한 산림(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산림문화·휴양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산림문화·휴양자원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산림여건을 고려하여 지역산림문화·휴양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역계획은 산림문화, 산림휴양, 산림치유 및 산림레포츠 등 부문별로 수립할 수 있다.

③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림문화·휴양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산림문화·휴양 자원 현황
3. 산림문화·휴양 자원관리 및 활용방안
4. 산림문화·휴양 시설 안전관리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산림문화·휴양자원의 현황과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등에 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 연구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사업추진) 시장은 산림문화·휴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산림문화·휴양 관련 조사 및 연구
2. 산림문화·휴양 시설 조성 및 정비
3. 산림문화·휴양 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
4. 산림문화·휴양 관련 민·관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산림문화·휴양자원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자연휴양림의 안전관리 등) ① 자연휴양림을 관리하는 자는 재난·사고 예방 및 재난·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용자 보호 등의 조치를 포함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자연휴양림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연휴양림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연휴양림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안전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 제7조의2에 따른다.

제8조(자연휴양림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자연휴양림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정된 장소 외에서 취사행위 및 흡연행위
2.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3. 자연휴양림에 설치된 시설을 관리인의 허락 없이 이동·반출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4.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5.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6.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상행위

7.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텐트나 자동차 등을 이용한 야영 행위

제9조(자연휴양림의 위탁) 시장은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조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영 제10조에 따른 법인·단체 등에 자연휴양림의 조성 또는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산림치유지도사의 활용 등) 시장은 시민이 치유의 숲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산림치유지도사를 활용하거나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산림문화·휴양자원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앙정부, 자치구 및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과태료) ① 법 제38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영 제16조 별표 4와 같다

②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제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